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이동성 물새류 보전과 서식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파트너십

(약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개요

이동성 물새들이 매년 이동하는 지리적 경로를 ‘철새이동경로’¹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8개의 주요 철새이동경로가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알래스카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이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28종의 조류를 포함, 250개 이상의 개체군에서 유래된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물새들은 이동하는 동안 휴식과 먹이를 생산성 높은 습지에 의존하며, 다음 단계의 여정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동 범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이동성 물새들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에서 일본과 호주 정부는 국제습지연합(Wetland International)과 함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이동성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Type II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제안했다. 이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Type II 발의안 목록에 포함되었다.

2004년 11월에 21개 정부,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에서 모여 이동성 물새 보전을 위하여 Type II 파트너십 모델을 이용, 향후 지역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파트너십이 정부,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본 파트너십은 아시아-태평양 이동성물새 보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이동성물새 보전전략 (APMWCS)과 그 전략에 따른 오리·기러기류 (Anatidae), 두루미류 (Cranes) 및 도요·물떼새류 (Shorebirds)를 위한 행동계획에서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 전략 및 행동계획은 1996년 이래로 이동성 물새를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를 보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조정 및 활동을 강화하고 이끌어왔다.

전략 및 행동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성과들로는 이동경로 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지 700여 개소 이상을 확인한 것과 오리·기러기류 (Anatidae), 두루미류 (Cranes), 도요·물떼새류 (Shorebirds)를 위한 서식지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것 뿐만 아니라 이동성 물새에 대한 지식 증진과 이러한 새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 이동경로 내의 이동성 물새에 중요한 서식지의 유지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역량 배양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개발로 인하여 물새류와 이들의 연안 및 내륙 서식지들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비번식기를 보내는 물새뿐만 아니라 이동기간 동안 이

¹ 부속서 II 정의 참조

동경로의 중심 지역을 이용하는 물새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본 파트너십은 이동성 물새들과 중요한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동성 물새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지의 질과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본 파트너십은 이동성 물새를 위한 서식지네트워크를 구축·증진하고,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역량 배양을 추구하게 되면, 본 문서의 부속서 III에 포함된 파트너십에서 다루는 이동성 물새군의 보전 상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또한 이동성 물새 보전에 대한 전체 이동경로 차원의 접근방식이 물새류의 보전 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많은 정부간 협정과 습지보호협약 (람사르협약),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CMS), 생물다양성 협약 (결의문 7.4, 7.28), UNDP와 UNEP 프로젝트 우선과제 및 가이드라인, UNEP 물 정책, 제 3차 세계 물 포럼에서 종합된 물 관련 행동 지침 등 기타 국제 프레임워크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람사르협약의 결의문 9.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람사르협약의 틀에 포함된 지역 발의안으로서 파트너십을 승인하는 것은 본 파트너십이 이동경로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결과이다.

또한 파트너십은 현재 이동경로 내에서 철새에 대한 양자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이 각 협정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이동경로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하였다:

제 1 조 - 법률적 지위

본 파트너십은 파트너들간의 자발적인 협력제로 엄격한 외교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제 2 조 - 취지, 목적 및 목표

취지

본 파트너십의 취지는 철새이동경로 전체에 대해,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역 관리자, 다자간 환경 협정, 연구기관, UN기관, 개발관련 기관, 산업 및 민간 부문, 대학교, 비정부기구,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차원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 협동과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

인류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의 이동성 물새들과 그 서식지가 잘 알려지고 보전되도록 함.

목표

1. 아시아-태평양 이동성물새 보전전략 (APMWCS) 네트워크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동성 물새의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이동경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2.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가치에 대한 소통, 교육 및 공공 인식을 강화한다.

3. 철새이동경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물새 및 서식지에 대한 지식 구축과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4. 자연자원 관리자, 정책결정자, 지역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서식지와 물새류 관리 역량을 배양한다.
5. 특히 우선적으로 중요한 종 및 서식지를 위해 이동성 물새의 보전 상태를 개선하는데 이동경로 전체에 걸친 접근법을 개발한다.

제 3 조 - 아시아-태평양 이동성물새 보전전략 (APMWCS) 네트워크의 성과에 기초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이동성 물새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네트워크 개발

1.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물새류 서식지 네트워크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의 설립은 본 파트너십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적 중요한 일련의 서식지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이동경로 내 이동성 물새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아시아-태평양 이동성물새 보전전략 (APMWCS)에 따라 만들어진 오리·기러기류 (Anatidae), 두루미류 (Cranes) 및 도요·물떼새류 (Shorebirds) 네트워크 등록 서식지는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검증 없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이다.
3. 서식지 네트워크는 각 지역별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종 또는 무리 (예를 들어, 오리·기러기류, 두루미류, 도요·물떼새류, 백로류, 제비갈매기류)를 명시하게 된다.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사이에 공유되는 종들은 파트너십 협력 활동의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정부 파트너들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지를 부속서 V의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목록에 작성하도록 요구된다. 부속서 IV에 명시된 서식지 등재기준에 충족되면, 파트너는 이를 제출하고, 그 지역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포함될 지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속서 V에 포함된다.
5. 정부 파트너들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록된 서식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정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6. 정부 파트너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가이드라인 (예: 습지 관리에 대한 람사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 내 네트워크 지역 관리자들이 지역 관리 계획을 개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가치에 대한 소통, 교육 및 공공 인식 강화

1. 파트너들은 전체 철새이동경로내에서 이동성 물새와 이동성 물새 서식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소통, 교육 및 공공 인식 활동을 장려한다.

2. 파트너들은 지역사회와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 및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이동성 물새와 이동성 물새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 인식을 증진하도록 촉구된다.
3. 교육과 인식 증진 자료에서 다룰 주된 내용은 물새들이 연간 생활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이동경로에 걸친 이동성물새 보전과 그 서식지 보호 개념이다.

제 5 조 - 이동경로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물새 및 서식지에 대한 지식 구축 및 정보 교환 증진

1. 파트너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동성 물새 개체군과 그 서식지와 관련한 전체 이동경로 상의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촉구된다.
2. 파트너들은 조류질병의 위험 평가와 대응계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성 물새의 이동 전략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3. 파트너들은 이동경로 내 연구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촉구된다.

제 6 조 - 자연자원 관리자, 의사결정자,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서식지 및 물새 관리 역량 배양

1. 파트너들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협력하도록 촉구된다. 이에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기술 증진, 관리계획 개발 및 시행, 물새 모니터링, 인식 및 공공 교육 증진, 연구의 체계화 등이 포함된다.
2. 파트너들은 특히 제한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동경로 내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관리할 때에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시행하도록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촉구된다.

제 7 조 - 특히 우선순위 종 및 서식지를 대상으로 이동성 물새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동경로 전체에 대한 접근방식 개발

1. 이동경로 내 우선순위 종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동성 물새, 지역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개체군, 보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 깃대종)과 그 서식지에 대해, 파트너들은 보전 및 종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증진하고 지원하도록 촉구된다.

제 8 조 - 회원 가입

1. 국가 정부는 본 파트너십 정관에 대하여 승인하고 본 파트너십의 목적 및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제 비정부 기구, 정부간 기구, 국제 비즈니스 부문은 본 파트너십 정관에 대하여 승인하고 본 파트너십의 목적 및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파트너십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개방되어 있다.
4.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에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독려한다.

5. 파트너들에게 신규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내용을 회기 외에도 공지한다. 신청건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파트너 목록에 추가된다.
6.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이행에 있어 정부내 여러 차원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 서식지차원의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7. 파트너들은 언제라도 파트너십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권고된다.
8. 현재까지 가입한 파트너 목록은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다.

제 9 조 - 행정

1. 우선적으로 파트너십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파트너 회의를 매년 또는 필요 시마다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파트너들은 2년 임기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3.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을 촉진하고 철새이동경로 전체에 걸친 활동 조정을 위해 사무국을 설립한다. 파트너들은 사무국에 자원을 지원 및 제공하도록 촉구된다.
4. 파트너들은 사무국의 특성에 대해 고려하고, 사무국 권한 및 역할 규정(TOR; Terms of Reference)을 개발, 채택한다.
5. 파트너들은 각 파트너 또는 기구로부터 사무국에 제공하게 될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다.
6. 파트너들은 파트너 회의에서 합의에 의해 본 파트너십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7. 파트너들은 합의에 의해 본 파트너십에 명시된 이동성 물새 분류군을 개정할 수 있다. 이에는 이동성 물새군을 부속서 III에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8.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9. 파트너들은 필요한 경우, 자문단, 상설 또는 임시 워킹그룹/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조직 구조 안은 부속서 VI에 기술되어 있다.

제 10 조 - 재정

1. 파트너들은 본 파트너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제공하도록 촉구된다.
2. 파트너 총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의 자금 확보를 위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 a) 파트너들이 본 파트너십 하에서의 활동 수행 지원;
 - b) 본 파트너십 하에서 설립된 사무국, 자문단, 워킹그룹/태스크포스 및 기타 그룹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속서 I- 파트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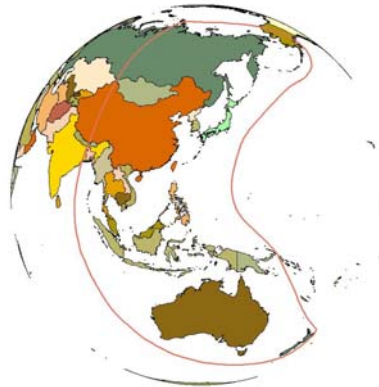
서명 (정부/정부간기구/비정부기구 파트너)	장소 또는 방법	일자
호주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일본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미국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이동성 야생동물보호협약(CMS) 사무국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람사르협약(RAMSAR) 사무국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대양주 도요새 연구회 (AWSG)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국제 두루미 재단 (ICF)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국제습지연합 (Wetlands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6일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임시사무국에 서면제출	2006년 11월 6일
국제조류보호협회 (Birdlife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보고르	2006년 11월 9일
일본 야조회 (WBSJ)	임시사무국에 서면제출	2007년 7월 18일
캄보디아	중국, 베이징	2007년 11월 13일
중국	임시사무국에 서면제출	2008년 3월 17일
UN 식량농업기구 (FAO)	임시사무국에 서면제출	2008년 11월 6일
물새와 습지트러스트 (WWT)	의장에 서면제출	2010년 1월 21일
미란다생물연구자트러스트(Miranda Naturalists' Trust)	의장에 서면제출	2010년 5월 18일

방글라데시	의장에 서면제출	2010년 6월 3일
태국	의장에 서면제출	2010년 9월 8일
몽골	의장에 서면제출	2010년 12월 3일
뉴질랜드	의장에 서면제출	2011년 9월 5일
리오틴토(Rio Tinto)	의장에 서면제출	2011년 11월 11일

부속서 II - 정의

파트너십의 취지에 대해:

1. ‘이동성 물새(Migratory waterbird)’는 부속서 III에 포함된 분류군의 물새의 종 또는 분류 단위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 개체를 의미한다. 이들 개체들의 상당수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1개 이상의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2.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는 여러 국가 및 대륙에 있는 각 서식지·생태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지구 물새 이동시스템 중 하나를 의미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미국의 일부 영토(알래스카), 러시아연방의 일부 영토(극동 러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 지역이 포함된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지도

3. ‘철새이동경로(Flyway)’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의미한다.
4. ‘정부 파트너 (Government Partner)’는 파트너십에 서명한 국가 정부를 의미한다. 이동경로 내에 있는 국가들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태국, 미국, 베트남이다.
5. ‘정부간기구 파트너 (Inter-Governmental Partner)’는 파트너십에 가입승인한 국제 및 지역 기구, 조직, 기관들이다.
6. ‘국제 비정부기구 파트너 (International Non-Government Partner)’는 이동경로 내 2개국 이상의 국가와 국제 비즈니스 부문에서 물새 보전 활동을 조정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국가 비정부 기구들로 파트너십에 가입승인한 기구들을 의미한다.
7. ‘철새이동경로 파트너 (The Flyway Partners)’는 철새이동경로 내 정부파트너, 정부간기구 파트너, 국제 비정부기구 파트너를 통칭하는 명칭이다.
8.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Flyway Site Network)’는 철새이동경로 상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이동성물새 종 및 개체군 서식지의 상호연결성을 의미한다.

부속서 III-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이동하는 물새 분류군

분류군	영 명	국 명
Gaviidae 아비과	Divers/Loons	아비류
Podicipedidae 논병아리과	Grebes	논병아리류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과	Cormorants	가마우지류
Procellariidae 슴새과	Shearwaters	스름새류
Oceanitidae 바다제비과	Storm Petrels	바다제비류
Pelecanidae 사다새과	Pelicans	펠리컨류
Ardeidae 백로과	Herons, Egrets and Bitterns	왜가리류, 백로류, 알락해오라기류, 덩불해오라기류
Ciconiidae 황새과	Storks	황새류
Threskiornithidae 저어새과	Ibises and Spoonbills	따오기류, 저어새류
Anatidae 오리과	Swans, Geese and Ducks	고니류, 기러기류, 오리류
Gruidae 두루미과	Cranes	두루미류
Rallidae 뜸부기과	Rails, Gallinules and Coots	뜸부기류, 쇠물닭, 물닭
Heliornithidae 지느러미발과	Finfoots	지느러미발
Jacaniidae 물평과	Jacanas	물평류
Haematopodidae 검은머리물떼새과	Oystercatcher	검은머리물떼새
Recurvirostridae 장다리물떼새과	Stilts and Avocet	장다리물떼새류, 뒷부리장다리물떼새
Glareolidae 제비물떼새과	Pratincoles	제비물떼새류
Charadriidae 물떼새과	Plovers	물떼새류
Scolopacidae 도요새과	Sandpipers	도요새류
Laridae 갈매기과	Gulls, Terns and Skimmers	갈매기류, 제비갈매기류, 재단새
Stercorariidae 도둑갈매기과	Skuas	도둑갈매기류
Alcidae 바다오리과	Auks	바다오리류

부속서 IV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기준 (Flyway Site Network Criteria)

이동경로 지역 네트워크로의 가입 심사를 위해서 본 파트너십은 아래와 같은 등재기준을 채택한다:

- a. 이동성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습지협약 (람사르협약, 1971 년, 이란)의 기준:
 - 기준 2: 습지가 취약종, 멸종위기종, 심각한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받고 있는 생태적 군집의 생존을 지원하는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간주된다.
 - 기준 5: 습지가 통상적으로 2 만 개체 이상의 물새를 부양하는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간주된다.
 - 기준 6: 습지가 통상적으로 물새류의 한 종 또는 한 아종의 총 개체군의 1%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간주된다.
- b. 아시아-태평양 이동성 물새 보전전략 하에서 적용된 중간 기착지 기준(staging criteria):
 - i. 기착지역이 정기적으로 이동성 물새류 한 종 또는 한 아종의 총 개체군의 0.25%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그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간주된다.
 - ii. 기착지역이 이동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한번에 5 천 개체 이상의 물새를 부양하는 경우, 그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착지로 간주된다.
- c. 예외적인 경우로, 어떤 지역이 이동성 물새 개체군의 특정 생활사 단계에서 그 개체군을 부양하여 종과 개체군의 유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명에 대한 당위성은 사례별로 파트너십에서 심사할 것이다.

부속서 V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포함된 지역

국가명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포함된 이동성 물새 서식지 (Migratory Waterbird Site)	해당지역을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이동성 물새 종 또는 여러 종 무리

부속서 VI - 파트너십 조직 구조 (안)

